진정서

진정인 곽홍근 곽춘규 010-3737-7004

피진정인 한상대 검찰총장님

불법적 판검사들의 사조직에 의하여 집과 땅을 빼앗기고 이렇게 검찰총장님을 상대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소속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진정해야 한다고 하여 이렇게 진정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직위를 악용하여 재산을 빼앗은 불법적 사조직의 대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관　박시환 (현재 변호사), 박일환, 김능환
법원장　지대운 (광주지법, 사건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장검사 박순관(서울중앙지법, 사건당시 춘천항소부 부장판사)
부장검사 손태근(성남지청, 사건당시 서울고검춘천지부 부장검사)
검사　주민철(영월지청, 사건당시 영월지청)
집행관　최ㅇㄱ(영월지원 경매계 집행관)
경매낙찰자 나ㅈㅁ(일반인처럼 낙찰을 받았으나 조직원으로 추정)

<사건 대강은 이렇습니다.>

법원의 불법사조직을 운영하는 일련의 판사들이 불법적 판결로 재산을 빼앗아 놓으면, 4-5년 동안 재판하면서 대부분의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일관되게 판결을 마칩니다. 그러면 아무리 법률적으로 완벽한 것처럼 짜 맞추어 놓아도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위증과 거짓증거들이 법원소송기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당연히 형사 고소감이 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탄핵증거가 되지요. 그러나 그 후에 등장하는 분들이 바로 이들의 사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는 불쌍한 검사님들입니다. 어떤 이유와 사연으로 결국에는 이 불법판사들의 청탁에 공범이자 정범이 되어 결국에 한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경매낙찰꾼들입니다. 정상적인 경매인이 아니라 불법적인 판결을 하고 나면, 정상적인 경매로는 장물인 것이 탄로 날 수 있으므로, 도둑들이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이런 류의 물껀들만 취급하는 일종의 먹이사슬의 최종 분해자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불법적판결의 완전범죄를 도모하며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증거들이 법원의 공판조서와 변론조서, 서증 등 소송서류로 남아있기에 이렇게 이들 불법판사들의 사조직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피진정인이 되신 한상대 총장님께서는 이 난국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명량해전>의 이순신 장군님의 일갈과 같이 “신에게 아직 12척이 남아있사오니 죽을 힘을 다내어 막아 싸우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함은 적다하나 신이 죽지 않았으므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라는 각오로 대적을 물리치신다면, 검찰내의 기막힌 형국과 사법부 속에서 불법사조직을 운영하며 검찰내분과

사법부를 사유화 하려는 바~알간 무리들을 섬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재산을 찾고 검찰은 정의의 보루라는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은 바~알간 무리로부터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를 보존하는 대업을 이루는 좋은 기회와 길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사건의 추이와 전개, 범죄의 현장을 탄원서 형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래의 탄원서는2011년 4월 22일 법원에 올린 것입니다.

<현재 2012.3월 21일, 아래 탄원서의 내용 중 바뀐 사실은>

1. 불법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고등법원 판사였던 지대운 판사는 현재 광주지법원장입니다.

2.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막아주던 주민철 검사는 현재 유학에서 돌아와 영월지검에 있습니다.

3. 불을 보듯 분명한 증거들을 가졌던 목격자 전xx, 특히 상대방인 김xx에 대한 고소건은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한 결과도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4. 특히 단독으로 춘천 항소부를 맡고 있었던 손태근 검사는 현재 성남지청에 있습니다.

5. 공범인 경매 낙찰자 나xx은 민사 소송을 걸어왔고,
평창군법원 2011가소691 부당이득금으로
소액재판이었는데 5차례의 변론과 3번의 선고연기를 통하여
결국 290만원에 조정 결정 되었습니다.
억울하여 근 1년을 안찾고 경매계에 남겨 두었던 1억8천만원
중에 1천 4백만 원을 가압류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참 놀랍지요)

6. 결국 경매잔액 1억8천여만원을 경매계에 그냥 두고 1년
가까이 억울함을 각계에 호소하자 이 불법 판사들은 그
큰 돈에 대하여 공범인 낙찰자에게 민사소송을 하게하여
가압류를 걸어 놓았고 2012년 3월 현재까지도 1천 4백만
원을 못 찾게 소송을 지연시켜가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7. 이 일련의 불법적 사법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1억8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경매가 끝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으며 각계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공범이었던 낙찰자에게
4개월 집을 비우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액재판을 하게하여 가압류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돈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파렴치한 짓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소액재판 판사님도 기가 막히니 선고판결을 3번이나
미루다가 결국에는 조정을 제안하였고, 이제 이들의
범죄행위를 모두 파악하였기에 그 조정에 응한 것입니다.

판사범죄신고 탄원서

탄원인 : 곽 춘 규 (교통사고 사건 피해자의 아들)
곽 홍 근 (사고 피해 당사자)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2-1 102호 (TEL: 010-3737-7004)

불법적인 판결로 재산을 빼앗고, 동료 판 검사들이 청탁과 부당한 소송지휘로 국가의 최후 보루인 법치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결국에 망국의 길을 걷게 하는 일련의 판검사들이 있어 이렇게 언론을 통하여 가슴이 무너지는
통곡의 탄원을 드리며, 속히 부모님께서 집과 재산을 찾고 생명을 보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강제경매 되고 남은 금액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 판사검사, 경매계, 집행관이 짜고서 전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 판사이고 검사는 고소한 것 막아 주고 경매계는 판사가 시키는 대로 행정 처리하고

집행관은 계고장 통고도 없이 강제 집행했습니다.

이번 달 2011년 4월 6일 강원도 봉평에서 76세 된 아버지와 71세된 어머니만 계시는 집에 아무

연락도 (계고장 절차) 없이 집달관은

무장한 경찰관 10명, 경매계와 집행관직원 7명 정도 용역 10여명정도로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잡아 놓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4륜 오토바이까지 마음대로 압류하여 증거를 훼손하였습니다.

(본 교통사고의 해당 오토바이지만 , 사건이 진행되었던 4년 동안 단 한번도 감정이나 검증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강제집행 하는 날 이들은 부모님의 당장 먹고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모두 보관소로 압류하여 갔습니다.

이날 부모님들은 망연자실하여 정신을 잃고 계셨고 , 서울에 살던

저는 2시간을 급히 달려가 보았으나 이미 모두 끝내 놓고 무장한 경관들과 경매계 직원들과 용역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법적 판사들의 범죄적 무력에 저는 그저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매했는데 왜 강탈당햇다고 주장 하느냐하면

1. 본 민사사건 1심 재판장인 영월지원 이중민 판사와 2심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지대운 부장판사가 짜고서

불법적인 소송지휘를 하여 일방에게 유리하도록 한쪽 편만 들어주고 재판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중 중간 중간 경매계에 청탁 지휘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앙심을 품고 지휘한 것입니다.

민사 1심 재판장 영월지원 이중민판사는 민사소송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고 불법한 소송지휘로

상대방의 1억5천의 청구중 1억 2천 만원정도를 판결하였고

저희 변호사의 반소신청에 대하여 취소하라고 법정에서 목소리 높여 종용하였고, 합의부로 넘겨야 할 재판을

끝까지 단독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반소 사건은 합의부에서 판결해야 하고 , 소가 1억 넘는 재판도 합의부에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단독 판결하였습니다.)

저희가 각계 각층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올리고 강제경매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이 모든 악행에

더하여 이중민 판사 자신이 직접 또 다시 그 이전에 신청해 놓은 이의신청들을 모두 기각하여 불법적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영월지원에는 이중민 판사 한사람 밖에 없는 것 처럼 모두 혼자서 처리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판결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모두 자신이 또 다시 기각시켰던 것입니다.

본건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이 2011년 4월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접수되어있고, 특히 춘천항소부에도
항소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관 사무소의 담당 모계장은 2달정도 여유시간을 줄 것처럼 통화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4월 6일 노인들만 사는 집에 군사작전 하듯이 무장경관10명과 집행부 7명 용역10명 정도로 연락도 없이
강탈하였고, 두 노인네가 당장 먹을 것과 옷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압류하여갔습니다.

2. 이렇게 억울하다면 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1). 최초 목격자 전xx은 상대방 가해자와 친한 사업관계입니다.
(씨감자를 공급하는 전효진과 공급받아 감자를 재배하는 사이)
이 최초의 목격자인 전xx은 교통사고 현장을 경찰이 오기 전
이유 없이 두 대의 오토바이를 모두 포개서 길 한쪽에 치워놓음
(---> 신고후 경찰의 현장도착 시간이 10분정도에 불과 함에도) 그 후 4년의 재판동안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최초 목격자 전xx을 고소하였지만(모두 법정 선서한 증언기록) 명백한 법정 증언 기록을 보고도 검사는
모해위증 등의 범죄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조건 기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직접 개입하여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손바닥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들 앞에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저희의 사륜 오토바이는 왜 증거는 고사하고 감정조차 받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심지어 영월지검의 주민철 검사는 너무도 분명한 고소장과 증거들 앞에서 그 이전년도인 2009년도에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아예 고소장을 진정서로 둔갑시켜놓고 수사를 하지 않고 또 기각시키려고 해서 청와대에 신고하자

다시 고소장으로 바꾸어 놓고는 동료 검사에게 기각시키게 하고

자신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사실은 도망간 것입니다.

주민철 검사는 2009년도에 청와대와 대검찰청을 경유한 탄원 진정서에 대한 조사에서

"대법관이 결정한 것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조사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초 목격자 전xx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변명할 수 없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두 번째는 도망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 2010년 7월 가해자인 상대방 김xx에 대한 고소장에 대하여

경찰은 4년 지난 사건에 대하여 같은 경찰서에 아직도 당시의

조사 경관인 김진오 경장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김xx에 대하여 위증으로 기소의견을 결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건 관계자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웬만한 증거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건에 대하여 영월지검 이상혁 검사는 증거불충분결정을 내립니다.

2011.2월 당시의 검찰조사에서는 조사계장이 위증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봉평에서 영월까지 2시간 걸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 이 조사관은 밤에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조사 시간 내내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담당검사인 이상혁 검사께

첫째 녹음되는 조사실에서 조사받게 해줄것과

둘째 현조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혁 검사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고서는 연락도 없이 인천으로 전임가기 2일전에 또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시켰습니다.

2011.4월 현재 이 사건이 춘천 항소부의 손태근 부장검사께 배당되었는데 이 손태근 부장검사는

바로 이전 사건인 최초 목격자 전xx의 항소장에 대하여 기각시킨 검사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되어있습니다.

손바닥 앞 뒤 보다도 더 분명한 증거들 앞에서도 기각결정을 한
손태근 부장검사께서 이번의 상대방 김xx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 , 경찰이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영월지검에서 올라가는 항소를 오직 한 검사만 통하여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항소의 취지를
감할 수 있고 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도 분명한 증거와 사실들 앞에서도 태연하게 불법적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대법관들과 형사재판 항소심에 관여했던 당시의 춘천지방법원의 박순관 부장판사를
배후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본 교통사고 사건 항소심 형사재판 당시에 이 교통사고 사건의 최초 목격자 전xx을 증인으로 불러주지 않는
이상한 재판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교통사고의 최초 목격자를 증인신청해주지 않는 판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무리 애걸 복걸 해도 본 교통사고의 핵심인물인 최초 목격자 전xx을 불러주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냥 종결하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기피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기피신청이 기각되고 난 후에 다시 재판이 재개 되자 그때서야 증인으로 불러준 것이고
이렇게 힘들게 불러 증언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로, 증언으로 남아있기에 이렇게 지금도 사건의 진

실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형사재판에서 박순관 재판장은 기피를 당하면서도 불러주지 않은 최초 목격자 전효진을

그 후에 열린 민사재판에서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중민 재판장이 불러서 마음껏 위증하게 해주고

불법적 소송지휘와 반소를 취소하라고 강요하고 합의부로 갈 사건을 끝까지 단독처리 한 것입니다.

즉 박순관판사가 후배판사인 이중민에게 사주하여 자신의 불법적 재판진행에 대하여 이의신청했다는

앙심을 풀려고 한 가정의 재산을 모두 강탈되게 한 것으로 재판기록과 증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씌워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데 허락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사고의 최초 목격자도 불러주지 않는 판사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재판을 진행 하겠습니까

사고 오토바이를 가해자인 상대방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없애 버리고 사륜 오토바이만 남아있는데

이 사륜 오토바이를 감정이나 검증조차 해주지 않는 판사의 속셈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너무도 명백한 사실들 앞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채택해 줄 수 없다며 증거신청, 감정신청조차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날 강도와 같이 불법적 판결로 인한 무력으로 재산을 빼앗겠다는 것 말고 그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답과 집을 모두 강탈당하였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고 망국적인 재판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위에

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님들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너무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언제든지 모두 밝힐 수 있습니다.

이 탄원서를 법원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들의 기소여부는 대한민국 법치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설사, 판사 검사라고 할지라도 직무에 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또
이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이런 사건 하나를 제대로 푸는 것은 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법관들을 비롯하여 관계된 판검사들 처벌되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빼앗긴 재산과 땅을 찾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현재 다니시는 목사님 사택의 빈 기간 동안만 (5월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법치가 꽃을 피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속히 부모님의 생명을

보전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신; 이들중 경매 낙찰자 나xx과 집행관 최xxf도 공범이고 한 패로서 정황상 증거가 여러 곳에 있지만

특히 뚜렷한 정황 증거는 지난 4월 6일 계고장도 없이 강제집행 해놓고 가져간 집기와 가구등 보관물을 10일 밖에

시간을 안주고 모두 경매처리한다고 공문이 왔고

한 술 더 떠서 3개월 동안 집을 비우지 않아서 손해가 났다고 2천만원의 부당이득금 배상소송을 낸 것입니다.

내 집에서 억울하게 강제로 쫓겨난 것만도 기막힌데 거기에 더하여 지연 손실금이라며 2천만원씩 요구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과 법을 모두 떠나서 백주에 강도짓과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들 , 집행관

낙찰자도 한 패,즉 공범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올바른 법집행으로 부디 법원에 뿌리 내리고 있는 법조 사조직 날강도들로 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노 부모님의 생명을 보전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 4. 22

탄원인 곽 춘 규 올림

위의 탄원서는 법원의 최후의 양심을 믿고 서울고등법원에 올린 탄원서입니다. 이들의 불법적 범죄 사조직을 뿌리 뽑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2. 3. 22

진정인 곽 춘 규 올림

추신

첨부문서로 이 사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각계인사들께 올린 자세한 사건내용의 탄원서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수재 검사는 옷을 벗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귀중